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97호

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23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건설현장 주체들의 불법행위(공정지연, 업무방해 등)가 지속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불법행위가 인지될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개정(제10조, 제11조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건설안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
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
- 전자우편 : zpdlnql@korea.kr
- 팩 스 : 044-201-5553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에서 정책자료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(전화 044-201-459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